

EBS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공고번호 : 제2022-12호

「한국교육방송공사 직영발행교재 인쇄제작 업체 선정」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EBS © 2022. 8.

한국교육방송공사

1. 입찰유의서

1. 입찰명 : 2023년도 한국교육방송공사 직영발행교재 인쇄제작 업체 선정

2. 목 적

-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이라 한다)가 행하는 인쇄제작 대행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입찰 품목은 국가적 시책의 일환으로 제작하는 교재로 제작기간 준수, 제작물의 질적 보장, 파본교재의 신속 처리, 제작물의 신속한 납품 등 교재 제작의 중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3. 계약의 종류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 공동수급(컨소시엄) 가능

- * 공동계약(컨소시엄) 시 컨소시엄 최대 2개업체로 구성이 가능하며, 대표자 1인을 결정하여 입찰참여 및 계약을 진행. 입찰·낙찰·계약·과업수행·과업관리·대금확인·대금지급 및 정산 등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컨소시엄 대표에게 있음.
-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업체는 어떠한 형태로든 동일 그룹 내에 중복참여 불가
- 단, 입찰그룹이 다른 경우에는 컨소시엄의 신규구성·변경 또는 단독 참여 가능
- * ‘다’ 그룹은 컨소시엄 불가

4.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5. 입찰품목

○ ‘가’ 그룹 : 4*6 운전 인쇄

교과		비고
①품목	국어1	국어 전과목, 한문, 논술 교재 포함 (단, 수능특강 ‘문학’ 제외) “수능특강” 국어 일부(독서,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②품목	영어1[고교]	고교 영어 전과목, 제2외국어포함 (단, 수능특강 ‘영어듣기’, ‘영어독해연습’ 제외) “수능특강” 영어 일부(영어)
③품목	영어2[초·중학]	초·중학 영어 전과목 “수능특강” 영어 일부(‘영어듣기’, ‘영어독해연습’)
④품목	수학+과학2	수학 전과목 “수능특강” 수학 전과목 및 “수능특강” 과학 일부(화학, ‘지구과학’)
⑤품목	사회	사회 전과목, 교재 세트 작업 및 부가 인쇄물 포함 “수능특강” 사회 전과목
⑥품목	과학1+국어2	과학 전과목, 종합서, 기타 교재 (단, 수능특강 ‘화학’, ‘지구과학’ 제외) “수능특강” 과학 일부(물리, ‘생명과학’) 및 “수능특강” 국어 일부(문학)

○ ‘나’ 그룹 : 국 운전 인쇄

교과		비고
⑦품목	국어	국어 전과목
⑧품목	영어 + 사회	영어 및 사회 전과목, 문해력 교재
⑨품목	수학	수학 전과목
⑩품목	과학	과학 전과목 교재 세트 작업 및 부가 인쇄물, 한문, 논술, 종합서, 기타교재 포함

○ ‘다’ 그룹 : 매업 인쇄

교과		비고
⑪품목	ELT 매업	ELT 교재

※ 1. 각 그룹은 교재 본문 규격을 기준으로 구분

2. 교과 구분은 “EBS”가 직영 출판으로 발행하는 초·중·고 대상 학습 교재로 하며, ‘기타대상 교재’는 유아·성인대상 교재, ‘종합서’는 교과구분이 없거나 교과 통합 형태로 발행하는 교재임

3. ‘세트작업 및 부가 인쇄물’은 각 교과를 취합하여 제작하는 세트물(초등 등)의 부가적인 인쇄물(스티커, 부록 등)과 이에 수반 되는 작업(취합, 투봉, 세트 완제품 납품 등)임. 이와 관련하여 취합작업 및 취합작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작업 및 보관공간(자체보관 또는 외부물류업체 등)을 확보하여 세트용교재 및 부속물에 대한 입고가 진행되는 경우 즉시 수용하여야 함

4. 교재개발(재활용 포함) 과정 중 신규교재가 개발되거나 기존 교재가 폐간될 수 있음

6.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나 기타 처분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또는 정지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아래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입찰 등록마감 일시 까지 참가 신청을 하고, EBS로부터 입찰 참가 승낙(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합격 후)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가. 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62조(인·허가사항)에서 정한 유자격자 및 동 시행세칙 제250조 제1항 각 호(부정당업체제한)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공장등록증명(신청)서에 등록된 종업원 수가 다음 기준 이상인 자

1. '가' 또는 '나' 그룹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등록된 종업원 수가 25인 이상인 자
2. '가' 또는 '나' 그룹 입찰에 참여자 중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최대 2개의 업체로 구성하되, 종업원 수는 각 업체 별 최소 10인이상, 컨소시엄 전체 25인 이상인 자
3. '다' 그룹 입찰에만 참가하는 경우 등록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자
 - ※ 입찰 제출서류(의료보험 납입증명서)를 통해 종업원 수가 확인되어야 하며, 최근 3개월 중 최소 종업원 수가 기준인원 이상이어야 함

다. 다음 시설을 소유(리스 포함, 임차 제외) 및 설치하여 운영(가동) 중인 자

구 분	소 유 시 설
'가'그룹	4/4도 이상 오프셋 4*6 운전 인쇄기 1대 이상
	4/4도 이상 오프셋 매엽 인쇄기 1대 이상
	30콤마 이상 무선 자동온라인 제본기(정합, 무선, 삼방재단) 1대 이상
'나'그룹	4/4도 이상 오프셋 국 운전 인쇄기 1대 이상
	4/4도 이상 오프셋 매엽 인쇄기 1대 이상
	30콤마 이상 무선 자동온라인 제본기(정합, 무선, 삼방재단) 1대 이상
'다'그룹	4도 이상 오프셋 매엽 인쇄기 2대 이상
	15콤마 이상 무선 자동온라인 제본기(정합, 무선, 삼방재단) 1대 이상

- ※ '가'와 '나' 그룹 동시 입찰참여자의 경우 매엽기 및 제본기는 각각 별도로 추가되어 총 2대 이상이어야 함. 단, 제본기의 경우 1대는 15콤마 이상, 1대는 30콤마 이상이어야 함.
- ※ '가'와 '나'와 '다' 세 그룹 동시 입찰참여자의 경우 매엽기 및 제본기는 총 3대 이상이어야 함. 단, 제본기의 경우 2대는 15콤마 이상, 1대는 30콤마 이상이어야 함.
- ※ '가'와 '다' 혹은 '나'와 '다' 그룹 동시 입찰참여자의 경우 매엽기 및 제본기는 총 2대 이상이어야 함. 단, 제본기의 경우 1대는 15콤마 이상, 1대는 30콤마 이상이어야 함.
- 소유 시설은 입찰 공고일 기준 4개월 이전까지 구매(국세청 신고 포함) 완료 또는 리스(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융 감독위원회의 등록을 마친 리스업체) 계약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여시설에 한함
- 소유(리스포함) 시설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제작(생산)된 기기로 최근 3년 간 연도별 정비(수리) 내역이 있어야 하며, 입찰참여자(동일인)의 동일 장소(공장등록증 주소지)내에 설치 및 운영(입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가동) 중 이어야 함

라. 위 각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서류를 서류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7. 입찰 참가신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정시간내 제출처 도착 분 까지 인정 마감시간 엄수

- 제출기간 : 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우편 또는 등기제출 등 불가

- 제출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재기획출판부(15층) ※ 신청 후 '신청확인서' 반드시 수령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EBS" 소정 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및 구청발행 공장등록증명(신청)서 각 1부

다. 건물(사무실 및 공장)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라. 제2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2공장에 대한 "나"호 및 "다"호 서류 각 1부

마.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개인 등본)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바. 전 직원 의료보험납입증명서(최근 3개월간 가입자 명부)

사.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입찰일로부터 60일 이상) 1부

아. 업무전담 예정자 및 감리전담 예정자 재직증명서(이력서 포함)

자. 입찰참가자격의 소유시설에 대한 내역서("EBS" 소정 양식)와 소유사실을 증명·확인할 수 있는 수입원장, 세금계산서(기 신고 완료 분), 거래명세서, 리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 사본

차. 청렴이행각서("EBS" 소정 양식)

카. 사무실 및 공장 약도(연락처 포함)

타.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기 정비 및 유지보수 내역

파. 어린이제품 KC인증 관련 시험성적서(종이, 잉크, 풀, 코팅제)

하. 컨소시엄업체 권리·책임 확인서("EBS" 소정 양식, 컨소시엄 참가자 限)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나~파', '자~팍'에 해당하는 서류는 각 업체 별로 준비하고 나머지 서류는 컨소시엄 대표업체가 준비하여 대표업체가 취합 제출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컨소시엄 대표 명의로 발행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단, 사본 제외) 이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상기 각 호의 순서대로 작성하여 원본 1부, 복사본 1부 및 PDF(또는 스캔)파일로 제출서류 일체가 수록된 USB 1개 제출

※ 사본서류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고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이어야 함

※ 어린이제품 KC인증 관련 시험성적서는 계약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8. 현장실사

- 입찰서류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EBS” 심사 기준에 따라 제출서류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통과한 입찰 참여 대상자를 (유선)통보한다.
- 제출 서류의 허위(시설의 미비 또는 서류상 내용과 불일치 등)가 발견 되는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사후 발견 시에는 기존 입찰 참여 진행사항 일체를 취소할 수 있다.
- 현장실사는 “EBS”가 실시하며, 입찰 참여자는 현장실사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입찰 참가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9.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등록) 시 ‘가’ 또는 ‘나’ 그룹 입찰참가자는 162,000,000원을, ‘다’ 그룹 입찰참가자는 50,000,000원의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가’, ‘나’, ‘다’ 그룹별 복수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그룹별로 입찰에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모두 참가 시 374,000,000원, ‘가’ ‘나’ 참가 시 324,000,000원)
-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공고문에 기재 된 입찰일로부터 60일 이상 확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현금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입찰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전액 EBS에 귀속한다.
 1. 최종 낙찰자가 지정 기일 내에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담합입찰을 하거나 타인의 경쟁 입찰 참가를 방해한 경우
 3.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10. 입찰방법 및 순서

- 입찰은 입찰참가 승낙을 받은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소유한 시설에 따라 각 그룹에 응찰(3개 그룹 모두 응찰 가능)할 수 있다.
- 입찰 장소 입장 및 입찰은 입찰참가신청인 또는 위임대리인(위임장제출필) 만이 가능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입찰진행 시 핸드폰을 포함하여 유무선 통신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 입찰은 다음의 입찰품목 순서별로 1개씩 실시한다.



- 입찰참여 대상자로 3개 그룹 모두 통보받은 업체는 3개 그룹에 모두 입찰 참여 가능하고 낙찰가능 품목은 3개 품목까지 허용하나, 동일 그룹 내에서는 1개 품목으로 제한한다.
- 낙찰자 선언은 모든 품목의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품목별로 최종 낙찰선언 및 낙찰비율을 공개하고, 입찰과정 중에는 해당품목의 낙찰자명만을 공개한다.
- 입찰 순서에 따라 입찰 진행시 유찰 품목이 발생할 경우 동일 장소에서 추가 입찰을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때까지 실시하며, 동 품목에 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에 그 다음 입찰 순서에 해당하는 품목의 입찰을 실시한다.
- 입찰 순서에 의한 각 그룹의 품목별 낙찰자는 별도의 낙찰자 좌석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동 품목 응찰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누설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동 품목의 낙찰을 취소하고 모든 입찰에 참여를 제한한다.

11. 입찰서 작성

- 입찰서는 입찰 당일 배부하는 입찰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공고로서 정한 「2005년 조달청 발표 '인쇄기준요금'(첨부 참조)을 적용한 원가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응찰(계약)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에 말소 또는 정정부분은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찰 비율은 말소 또는 정정할 수 없다.
- 입찰서의 응찰 비율(%)은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한다.[(예) 98.76%]

12.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밀봉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1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 방법은 공고로서 정한 「2005년 조달청 발표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한 원가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응찰비율이 "EBS" 예정비율 이하로 응찰한 자 중 최저 비율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비율 응찰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 × 추첨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용지품질검사를 위한 본문용지 샘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지생산 즉시 A4크기 30매 이상을 골판지를 이용, 구겨지지 않게 검은색 비닐 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3부 제출(용지 생산자 발행 품질검사 시험 데이터 자료 첨부)

14.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5.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정정한 후 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8. 입찰 참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 및 위·변조하였을 경우
9. 기타 “EBS”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28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입찰

15. 계약체결

- 각 그룹의 품목별 최종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상기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해 낙찰 취소된 품목은 재 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거나, 각 품목별 최종 낙찰자를 제외하고 “EBS”예정비율 이하로 응찰한 자 중 최저비율 응찰자 순으로 수의계약(계약해지 품목의 계약비율 기준)을 통하여 해당 품목 계약자로 선정할 수 있다.

16.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계약품목별로 ‘가’ 또는 ‘나’ 그룹은 각각 324,000,000원, ‘다’그룹은 100,000,000원을 계약체결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EBS” 및 공공기관에 계약 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초·중·고교 학습참고서 또는 교과서)을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상기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기 계약보증금은 “EBS”에게 귀속한다.

17. 입찰 및 계약의 성립

- 본 입찰은 경쟁 입찰로서 모든 품목별로 복수의 입찰참여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 계약은 공사와 계약대상자(최종낙찰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계약자가 계약 기간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제된 품목은 “EBS”가 필요시 별도의 업체선정 절차 없이 각 품목별 최종 낙찰자를 제외하고 “EBS”예정비율 이하로 응찰한 자 중 최저비율 응찰자 순으로 수의계약(계약해지 품목의 계약비율 기준)을 통하여 해당 품목 계약자로 선정하거나, 동 입찰로 계약된 타 품목 계약업체와 추가로 계약할 수 있다.

18. 관계사항의 숙지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 내용, 입찰 유의서, 계약조건, 제작 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EBS”로 문의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절차’,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과업수행’,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 등 일체의 관련 업무는 컨소시엄 대표를 통해 진행되며, 본 입찰 및 입찰에 따른 계약과 관련 일체의 권리와 책임은 컨소시엄 대표에게 있음.

19. 안내 및 문의

- 주 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학교교육본부 교재기획부
- 담 당 : 조봉교
- 사업관련 및 계약관련 문의
- TEL : 02-526-3818, e-mail : hi@ebs.co.kr

-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2. 시설소유내역서(서식). 끝.

【붙임 2】

소유 시설 내역

구분	제작사	기기명(모델명)	시리얼번호	색도 (콤마)	제작 년/월	구입 년/월	생산능력 (1일)
운 전 기	국 운 전						
	4x6 운 전						
매 엽 기							
제 본 기		무선 :					
		정합 :					
		삼방 :					
		무선 :					
		정합 :					
		삼방 :					
기 타							

첨부 : 소유 기기별 수입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등 증빙서 각 1부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사용인감)

한국교육방송공사 귀하

II. 계약조건

계 약 서 (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 와 _____(이하 “인쇄협력사”라 한다)는 『2023년도 EBS 직영발행교재 품목_____인쇄(제작) 계약』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EBS”와 “인쇄협력사”가 EBS 직영교재 발행·보급 사업의 중요성과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 “인쇄협력사”는 별첨 「2023년도 EBS 직영발행교재 공통사양서」에 따른 교재 제작(인쇄)을 위해 “EBS”의 편집 대행사와의 필름 또는 데이터파일 인수, 교재 제작(인쇄 및 제본 등), 포장, 납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② “2023년도 EBS 직영 발행교재”란 “EBS”가 2021년도 교재개발계획에 의거 초등, 중학, 고교(연계 및 비연계) 및 단행본 등 발행 대상 교재로 결정한 교재를 말한다.

제4조(계약비율) ① 계약비율은 “EBS”가 정한 「2005년 조달청 발표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한 원가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인쇄비 지급 시 적용하는 비율로서 _____%로 정한다.

②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은 제 8조에 정한 ‘대금산출 방식’에서 지대 가격을 발주 당월 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를 적용하여 반영한다. 만약 물가자료에 없는 지대의 경우 당월 ‘페이퍼 프라이스’ 홈페이지의 고시 가격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인쇄협력사”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_____ 원을 “EBS”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쇄협력사"가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EBS"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위약별로 계약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계약보증금은 "EBS"에 전액 귀속되고, 이와 별도로 "EBS"는 "인쇄협력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이행 완료한 후 "인쇄협력사"의 청구에 의해 반환한다.

제6조(제작사양) ① "EBS"의 교재 개발 계획에 의거 전년도 기준의 교재가 폐간되거나, 신규 교재가 발행 될 수 있으며, 교재개발 및 발행과정 중 사양(규격, 색도, 면수, 지질 등)이 변경될 수 있다.

② 교과별 교재 발행 책 수, 부수, 교재 규격, 예상면수 등은 교재개발 과정 및 판매 추이에 따른 변동이 많이 발생하므로 별도로 사전 제공하지 않으며, 공통 사양서 만을 제공한다.

③ "인쇄협력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 및 인지하고 계약체결에 임하며, 이에 대하여 "EBS"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본문용지) ① "인쇄협력사"가 사용하여야 할 본문 용지(원지)는 별첨 「2023년도 EBS 직영발행교재 공통사양서」에서 정한 품질(사양) 검사 후 EBS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하여야 한다.

② "EBS"의 요청 시 "인쇄협력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본문 용지(원지)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인쇄협력사"는 교재 제작 과정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 합격된 용지(원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EB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승인된 용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EBS"에 통보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EBS"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본문용지의 품질 검사를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대금산출방식) ① 제작대금 산출방식은 「2005년 조달청 발표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한 원가산출 방식」에 별첨 「2023년도 대금산출 및 후가공 기준표」와 발주 당월 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의 서울기준 지대(종이)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계약비율을 승하여 산출(부가가치세 포함)한다. 만약 물가자료에 없는 지대의 경우 당월 '페이퍼 프라이스' 홈페이지의 고시 가격을 적용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때 발주부수를 기준으로 3,000부 이상은 윤전인쇄 단가[표지, 간지(속표지 포함) 및 별지 등은 매엽 인쇄 단가 적용]로, 그 미만은 매엽인쇄 단가를 대금 산출에 적용한다.

② 교재별 판매추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인쇄에서 3,000부 이상 5,000부 미만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본문(해설포함) 인쇄비에 30%를 가산한다.

제9조(인쇄대금의 지급) "인쇄협력사"는 매 발주건(교재)별로 "EBS"의 발주서에 의한 인쇄물품의 납품을 완료한 후 "대금산출 청구(계산)서"와 함께 납품부수에 대한 입고 확인 내역[EBS 물류대행사 날인 포함 및 입고증 사본(EBS 물류대행사 확인 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인쇄협력사"의 계산서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EBS"가 지급한다. 다만, "EBS"의 예산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 "인쇄협력사"와 협의하여 지급기일을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인쇄대금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 체결 후 인쇄대금 지급에 하자나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내·외부감사의 지적사항 등으로 인쇄대금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인쇄협력사"는 언제라도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EBS"는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 "EBS"는 계약 종결 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쇄협력사"에게 지급할 지급금이나 타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인쇄협력사"가 "EBS"에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쇄협력사"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인쇄협력사"가 납품기한 내에 교재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인쇄대금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EBS"가 "인쇄협력사"에 지급할 대가(인쇄대금) 등과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② "지체상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EBS"가 발주한 수량 중 "인쇄협력사"가 미 납품한 수량(금액)에 한하여 지체상금을 적용
2. 납품 이후 유통과정에서 "인쇄협력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파본(제본 및 인쇄 불량 등 포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수량에 한하여 지체상금을 적용(지체일수는

정상교재로 대체 납품이 완료된 시점)

③ “지체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을 하였을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납품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상기 제2항 2호의 경우에는 정상교재로 대체 납품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인쇄협력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EBS"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EBS"는 "인쇄협력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인쇄협력사"는 "EBS"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BS"는 "인쇄협력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EBS"에 귀속되고, "인쇄협력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EBS"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1. "인쇄협력사"가 납품기한을 10일 이상 초과할 경우
2. "인쇄협력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별첨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업무진행 차질 및 교재 품질(과본 포함)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4.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제출한 용지가 "EBS"가 지정한 품질에 미달될 경우
5. 나머지 기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으로 한다.

제16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EBS"와 "인쇄협력사" 쌍방 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7조(기타) ① 별첨 「과업지시서」는 본 계약서의 일부로서, 본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계약기간 중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EBS”와 “인쇄협력사”가 협의하여 추가로 약정할 수 있다.

④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⑤ “인쇄협력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계약체결하는 경우, ‘과업수행’ 및 ‘과업관리’, ‘대금정산’ 등을 비롯하여 일체업무는 컨소시엄 대표를 통해 진행하며 본 계약 관련 ‘해당 컨소시엄’의 일체의 권리와 책임은 컨소시엄 대표에게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EBS”와 “인쇄협력사”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EBS”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 국 교 육 방 송 공 사
사 장 김 유 열 (인)

“인쇄협력사”

III. 청렴계약

청렴계약(입찰) 이행 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IV. 컨소시엄 구성업체 권리 · 책임 확인

컨소시엄 구성업체 권리 · 책임 확인서

당사는 EBS가 진행하는 “직영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컨소시엄 구성 기본사항

- “컨소시엄 대표업체”와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본 입찰의 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이 “컨소시엄 대표”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입찰 및 계약과 이에 따른 과업수행 및 정산 등 일체의 행위는 “EBS”와 “컨소시엄 대표업체”가 진행하며, “컨소시엄 대표업체”의 행위는 “컨소시엄 대표업체”와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의사를 대표합니다.

2. 과업수행 관련 사항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컨소시엄 구성 업체 간 업무수행의 범위, 대금지급 기준, 대금지급 방법 등은 컨소시엄 구성업체 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컨소시엄 업체 간 과업수행내용과 범위 및 대금지급기준 등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이 ‘EBS와의 과업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여, EBS와의 계약 시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BS와 계약기간 중 컨소시엄 내 분쟁발생 최소화 목적)
- “컨소시엄 대표업체”는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EBS” 요청하는 과업을 수행합니다.
-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EBS”에서 요청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컨소시엄 대표업체”에 적극 협력합니다.
- “EBS”와 “컨소시엄 대표업체” 간 주요합의사항은 “컨소시엄 대표업체”가 “컨소시엄 참여업체”와 반드시 사전 합의 후 진행하고, “EBS”와의 합의결과 등 주요사항은 컨소시엄 업체 간 즉시 공유되어야 합니다. 중요사항에 대한 컨소시엄 내부의 합의 및 업체 간 공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컨소시엄 대표업체”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권한과 책임은 “컨소시엄 대표”에게 있으며, “컨소시엄 대표”와 “컨소시엄 참여업체” 간 분쟁 등에 “EBS”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대금의 정산 및 지급은 “컨소시엄 대표”를 통해 진행합니다. “컨소시엄 대표”가 아닌 “참여업체”는 “EBS”에 정산 및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EBS”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과업수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컨소시엄 대표"에게 있으며, 납품된 교재의 하자발생 또는 납기지연 등의 일체의 과업관리 책임도 "컨소시엄 대표"에게 있습니다.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수행공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도 "컨소시엄 대표"가 책임. 컨소시엄 구성업체 간 책임 및 배상은 해당 업체 간 별도처리.)
-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폐업 등) 입찰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하여, 자격요건에 대한 EBS의 검증절차를 득한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대표업체"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컨소시엄 참여업체"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컨소시엄 대표"업체는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컨소시엄 (대체) 참여업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선정지연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휴업,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즉시 "EBS"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동의 사유와 범위, 계약된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이 변경(참여업체 변경 등)될 수 있으며,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EBS"와 "컨소시엄"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컨소시엄 대표업체"의 운영사항에 변동(휴업, 폐업 등)으로 과업수행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서'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EBS"와 "컨소시엄" 간 체결된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 되며, 이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귀속 되고,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컨소시엄 대표"업체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컨소시엄 대표업체"가 타 업체로 변경되는 것도 불가. '계약서' 13조(권리의무양도금지))
- 컨소시엄 업체 또는 업체 간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컨소시엄 대표"는 즉시 "EBS"에 관련 사항을 통지하고, 즉시 해당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즉시(최대 2주 이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EBS"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2년 월 일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컨소시엄 대표업체"	"컨소시엄 참여업체"
업 체 명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주 소
대 표 자	(인) 대 표 자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